

# 2022 가족친화인증 안내

## 가족친화인증이란?

가족친화제도\* 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
\*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, 유연근무제도,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

※ 법적근거 :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15조

공고기간 | 2022년 8월 3일(수) ~ 8월 31일(수)

신청대상 |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

신청방법 |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

www.ffsb.kr → 가족친화인증 → 인증신청 → 제출서류 업로드

→ 신청서·사업자등록증 및 홈페이지 직접 입력(운영체제, 실적 등)

※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.

## 인센티브 지원현황

- 01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가점,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, 출입국 심사시 전용심사대 이용 편의 제공, 은행 투융자 금리우대등 239개
- 02 가족친화 우수기업·기관 정부 포상
- 03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홍보(신문광고, 우수사례집 배포 등)
- 04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(인증유효기간동안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)

## 신청비용

구분	중소기업	대기업·공공기관	비고
신규인증 신청	무료	1,000,000원	부가세 별도
유효기간 연장 신청		500,000원	
재인증 신청			

## 온라인설명회

- 일시 : 8월 11일(수) 14:00~16:00
- 신청 :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[www.ffsb.kr](http://www.ffsb.kr) » 가족친화인증 » 인증설명회신청

## 문의

가족친화인증사무국  
TEL 02-6309-9042~3, 9048 E-mail [ffm@ikmr.co.kr](mailto:ffm@ikmr.co.kr)